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08. 25.

발의의원 : 이재숙, 권기훈,
김재용, 류종우,
박소영, 박창석,
이재화, 전경원,
전태선, 정일균,
조경구 의원
(11명)

1. 제안(개정) 이유

관내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기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장시설 외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2분의 1 감경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제6조제4항 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

④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의 용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를 준용한다.
2. ‘인체조직’ 등의 용어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연하는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